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63호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4 0 9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 2
분 공시송달공고
- 공 고 제 4 1 4 호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4
수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공 고 제 4 1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 26
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36
예고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입법예고
- 보 건 소 공 고 제 2 9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 60
리 공고

고 시

- 고 시 제 3 0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6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409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마4872,**누1629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2.26.(화) ~ 3. 13.(수)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2.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2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마4872	권*주,유*숙	2019-02-20	기타	안전기준위반(불법등화:미인종 등화(시큐리티,전조등색상상미))	215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 *층(구월동)
2	**누1629	백*경,이*관	2019-02-14	배달(경비원수령)	안전기준위반(불법등화:글라스윌, 리플렉터, 옐로우 LED)	215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414호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3.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 시설현황

명칭	소재지	개설일	비고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래로 645, 2층(만수동, 남동구평생학습관 내)	(다가)2009.4.2. (건가)2012.1.1.	사무실, 상담실, 언어치료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남동하모니센터	호구포로 203-31(논현동, 논현포대 근린공원)	2012.9.22	사무실, 작은도서관, 시청각실 등

※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남동하모니센터로 이전(2019. 5월 예정)

2. 사업(위탁)기간 : 2019. 6. 1. ~ 2021. 12. 31. (2.7년)

3. 위탁사무

- 위탁범위 :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구분	사 무 명	사 무 의 내 용	비 고
공통	센터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가족관계	▶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지원) ▶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방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 조성 ▶ 이혼 전·후 가족지원 ▶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돌봄	▶ 가족역량강화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가족생활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공동육아나눔터(가족품앗이) ▶ 가족 사랑의 날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별도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 ▶ 다함께돌봄사업 ▶ 한국어교육 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사업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남동 하모니센터	한국어 교실	▶ 한국어 기초, 초급, 중급, 토픽반, 말하기반 운영 ▶ 사회통합 한국어반 운영(법무부지원) ▶ 한국생활,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	
	여가·문화 체험교실	▶ 청소년 멘토링, 우쿨렐라반, 유아책놀이, 원예교실 등 운영	
	취업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취업처 발굴 및 취업연계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운전면허, 컴퓨터 교실)	
	다문화 전시체험	▶ 다문화 전시체험관 운영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 생활다례	
	기타	▶ 하모니 작은도서관 운영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세부 수행사업은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및 구 계획 등에 의해, 매년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4. 운영재원 :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 보조금 예산지원기준 : 기본운영비 및 개별사업비 등 지원
- 수탁기관 부담금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및 필요시 지원해야 함.

5.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사업 지침에 따라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성실하게 관리·운영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가족사업안내 및 다 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관련 사업 수행
 - 화재 및 시설이용 관련사고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책임자 보험 등에 가입
-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
- 민간위탁금(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수탁 신청시 제시한 자체 부담금은 위탁운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매년 출연하여 센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으로 사용
-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며 수탁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은 수탁신청기관이 부담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 하모니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6.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

※ 보조금 지원 외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수탁 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기관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 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법규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리 및 생계를 위해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7. 센터장의 자격기준

- 관련사업 3년이상 실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5년이상 실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 현재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중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 유지

8.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9. 2. 27.(수) ~ 3. 13.(수)
 - 공고기간 중 신청 법인·단체가 1개소 일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하며, 재공고시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 심사
- 접수기간 : 2019. 3. 13.(수) ~ 3. 22.(금)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다문화사업소(☎032-453-6497)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토, 일, 공휴일 및 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가.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1]
 - 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2]
 - 다. 기관 일반현황 [서식 3]
 - 라. 사업운영실적 [서식 4]
 - 마. 사업계획서 [서식 5]

바. 자부담 협약서 [서식6]

마. 서약서 [서식 7]

※ 신청서류는 원본 1부 사본10부로 제본하여 총 11부(A4) 제출(쪽번호 기재)

- 사본 10부는 주민등록 뒷번호 별표 처리

- 제출서류 (가)~(마)까지 순서별로 편철 후 증빙자료 순서별 별첨(라벨 부착)

- 각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사시 요약 보고용 PPT자료(USB)를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제출

9. 심사 및 통지

○ 위탁심의 위원회 심사

가. 개최일정 : 신청 기관에 개별 통보

나. 내 용 : 건강가정·다문화 수탁응모자 사업 설명 및 사업내용 등 심사

다.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라. 심사방법

(1) 심사당일 기관대표 또는 시설장예정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답변

- 기관별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 질의 응답 10분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2) 신청기관 개수와 관련 없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으로 선정, 60점 미만인 경우 재공모 추진(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3) 동점이 나올 경우 사업 운영·실적능력(1순위), 운영 계획의 적정성(2순위) 심사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3) 다수 기관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탁기관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공모 추진)

마. 심사기준

○ 평가항목 : 5개분야 16개 항목 10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계		100	
기관 적격성(10)	유형 및 설립목적	5	
	적격성	5	
재정능력 및 공신력(20)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5	

	최근 기관 재무제표	5	
	지역사회내 공신력 제고방안	5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5	
사업 운영·실적능력(30)	기관대표 및 이사회 의 적합성	5	
	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10	
	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5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10	
운영계획의 적정성(30)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10	
	사업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5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5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5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5	
센터장 전문성 및 운영의지(10)	센터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10	

※ 비위사실 등이 있을 경우 감점 부여(-5점)

○ 선정결과 통지

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선정

나. 통지방법 : 개별통지 및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게재

10. 위탁운영 계약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계약 체결

11. 기타사항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현장답사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관련규정, 현지 여건 등 미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공고사항에 미기재된 센터 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 등은 당해 연도지침(가족사업안내,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준용하며, 기타 공고문의 해석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만, 구에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다문화사업소 (☎ 453-6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

수탁신청제출자료

I.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1】

II.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2】

III. 기관 일반현황 【서식 3】

- | | |
|--------------------|--------------|
| 1. 기관 일반현황 | 2. 설립근거 및 목적 |
| 3. 기관 대표자 및 센터장 현황 | 4. 임원현황 |
| 5. 기관 조직도 및 직원 현황 | 6. 재정현황 |

IV. 사업운영실적 【서식 4】

- | | |
|-------------------|------------|
| 1. 기관 운영실적 | 2. 사업 운영실적 |
|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현황 | |

V. 사업계획서 【서식 5】

- | | |
|------------------|----------------|
| 1. 수탁신청의 배경 및 목적 |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3. 조직구성 | 4. 사업계획 |
| 5. 센터운영 | 6. 지역사회 협력조성 |
| 7. 세입·세출 예산서 | 8. 기타 기관 특수시책 |

VI. 자부담 협약서 【서식 6】

VII. 서약서 【서식 7】

* 각 서식별 요청한 첨부 서류 및 증빙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반드시 제출

2019. .

○ ○ ○ ○ ○ ○ ○ ○ ○

[서식1]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법인(단체) 현황	법인(단체)명		법인(단체)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일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팩스번호	
센터장 현황 (내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업무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붙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 법인(단체)대표 (인)

첨부서류 : 1. 기관 일반현황
2. 사업운영실적
3. 사업계획서
4. 자부담확약서
5. 서약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의
수탁운영 신청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 운영기간 및 퇴사 후 3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19. . . 신청인 (인)

[서식3]

기관 일반현황

1. 기관 일반현황

가. 기관명칭 :

나. 기관유형 :

다. 설립일자 :

라. 소 재 지 :

마. 기관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첨부

2.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가. 설립근거 :

나. 목 적 :

3. 기관 대표자 및 센터장 현황

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나. 센터장(채용예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 가족관련 및 다문화 관련 업무경력 위주로 작성

다. 센터장 근무경력 현황(채용예정자)

구분	센터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락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년 월		

라. 센터장 자격증 취득 현황(채용예정자)

취득일자	자격증종류	시행기관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 첨부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등),
경력증명서(가족관련사업), 센터장 경력관련 증빙

4. 임원현황: 명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임 기	연 락 처

5. 기관 조직도 및 직원현황

가. 조직도

나. 상근직원 현황

부서(직위)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담당업무	비 고

6. 재정현황

가. 기관 재산 현황 (공고일 기준)

1)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A+ B-C)	부동산(A)	동산(B)	부채(C)	비 고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2) 재산 성질별 현황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부동산(토지)

(단위: 천원)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비고 (용도)
계							
1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부동산(건물)

(단위: 천원)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총가액 (천원)	비고 (용도)
계						
1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 동산현황

(단위: 천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 액	비 고

※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 부채현황

(단위: 천원)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 부채증명확인원 등 증빙서류 첨부

② 수익용 기본재산(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 서류 첨부)

○ 부동산(토지)

(단위: 천원)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m ²)	총가액 (천원)	비고 (용도)
계							
1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부동산(건물)

(단위: 천원)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표	총가액 (천원)	비고 (용도)
계							
1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 동산현황

(단위: 천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 액	비 고

※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 부채현황

(단위: 천원)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 부채증명확인원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기타 재산(보통재산)

○

○

나. 최근 3년간('16~'18년) 기관 연간수입액

(단위: 천원)

수입내역	2016	2017	2018	비고
계				
수익사업				
재산수입				
보조금				
후원금				
차입금				
전입금				
기타				

※ 연도별 증빙서류 첨부

다. 최근 3년간 결산서

(단위: 천원)

구분	세입						세출			
	계	보조금	사업수익	전입금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연도별로 재무재표(관할 세무서 발행) 또는 결산서 첨부

[서식4]

사업 운영 실적

1. 기관 운영실적

가. 도덕적·법적 건전성 (수상, 우수인증, 우수사례 등)

(2016 ~ 2018)

연월일	내용	시행기관	비고

※ 원본대조필 날인한 증빙자료 제출

나.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2016 ~ 2018)

점검일시	점검기관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사업 운영실적

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운영 실적

(2016 ~ 2018)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시설규모 (연면적)	기관지원금 (연간)	종사자 수	기관건립 /수탁여부

※ 시설 신고필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2016 ~ 2018)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시설규모 (연면적)	기관지원금 (연간)	종사자 수	기관건립 /수탁여부

※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유형 표기

※ 시설 신고필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다. 수상/평가실적

(2016 ~ 2018)

연월일	내용	시행기관	비고

※ 원본대조필 날인한 증빙자료 제출

라.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2015 ~ 2017)

점검일시	점검기관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현황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현황, 인적자원 확보현황 등)

○

○

[서식5]

사 업 계 획 서

1. 수탁신청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3. 조직구성

가. 센터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 1) 센터장 채용계획(경력, 자격증 첨부)
- 2) 종사자 전문성 확보 등

나.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1) 조직도
- 2) 업무분장 내역

4. 사업계획

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나.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기본사업, 특성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5. 센터 운영

가.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나. 센터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다. 재정운영 계획

라. 재정투자 계획 (향후 3년간 자부담금 등)

- 후원금 조달 외에 기관의 재정부담금 지원 등의 방법 및 해당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천원)

연도별	자부담금	부담방법	부담시기	비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 ※ 첨부서류 : 기관인감증명서,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회의록) 사본 1부
- ※ 위탁기관으로 결정 후 본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며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마. 시설물관리에 관한 계획(점검, 교육, 훈련 등)

6. 지역사회 협력조성

- 가.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다. 지역사회내 인적·물적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7. 세입·세출 예산서 : 2019~2021년 별도 작성

8. 기타 기관 특수시책

[서식6]

자부담 약속서

_____은(는)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등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센터 운영시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래 자부담 이외에도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기관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 기관 자부담 지원방법

연도별	경비부담자 (기관)	자부담 계획 (부담액)	부담방법	비고
2019년			예)매년 1월 현금지원	
2020년				
2021년				

※ 첨부서류 : 기관대표 인감증명서, 자부담 이행 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 인(단체) :

주 소 :

대 표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7]

서 약 서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 법인(단체)는 금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수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 각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만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4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2.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배사업법」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부적당한 경우로 명시한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개정 : (안 제4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에서 구분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인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각각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개정 : (안 제4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위임사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199, FAX 453-26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1조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구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 (안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 규정 신설 :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1조제3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장소”를 “경우”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6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u>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u> 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u>법 제16조제3항</u> 의 부적당한 <u>장소</u>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 라. (생략)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 <u>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u> ----- ----- ---. 1. (현행과 같음) 2. ----- <u>법 제16조제2항</u> ----- <u>경우</u> ----- -----.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u>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u> 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정소매인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	② -- <u>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u> -- ----- -----. 1. (현행과 같음) 2. ----- ----- ----- -----

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해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4. (생략)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시행규
칙 제7조의3제3항-----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_____.

3. _____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

(현행과 같음)

③ -----
----- 시행규칙 제7조
의3제2항 또는 제3항-----

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

④ -----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6조를 준용한다.

[참고자료]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1. 2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7.>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5조를 준용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2. 28.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명시한 조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1,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규칙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정순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40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28일

발 의 자 : 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명시한 조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남동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③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 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 에 첨부하여야 한다.</u>	<u>〈삭 제〉</u>
<u>⑤ 의안발의시 비용추계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 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 장으로 본다.</u>	<u>〈삭 제〉</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 (인)

[참고자료1]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4.]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2. 28.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 날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 2019. 2. 28 ~ 2019. 3. 5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33 남동구의회 / ☎ 453-502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41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김윤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 날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등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조례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하고, “규격, 등록관리 기타”를 “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을 “직인”으로, “비치 할”을 “갖추어 둘”로 한다.

1. 남동구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글씨)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4조 중 “일변”을 “한변”으로 하고, 제5조 중 “사무국에”를 “사무국장이”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날인)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9조 중 “관보 또는 공보”를 “구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등록대장”을 “대장”으로 하며 비고 중 “관인”을 “공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cm)

구 분		한변의 길이
청인	남동구의회	3.6
직인	남동구의회 의장	3.0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2.4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u> 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u>규격, 등록관리 기타</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남동구의회</u> ----- ----- -- <u>관리에</u> ----- -----.
제2조(종류) ① 공인은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u>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u>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회장</u> 2. <u>각상임위원회위원장</u> 3. <u>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장</u>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u>공인</u> 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u>공인</u> 을 따로 <u>비치할</u> 수 있다.	제2조(종류) ① ----- <u>남동구의회</u> ----- ----- ② ----- 1. <u>남동구의회 의장</u> 2. <u>각 상임위원회 위원장</u> 3. <u>남동구의회 사무국장</u> ③ ----- <u>직인</u> ----- ----- --- <u>직인</u> --- <u>갖추어 둘</u> -----.
제3조(인영의 내용) ① <u>청인의 인영</u> 은 <u>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u>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u>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u> ② <u>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u>	제3조(글씨) <u>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u> <삭 제>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u>일변</u> 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규격)----- ----- <u>한변</u> -----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u>사무국</u>	제5조(교부 및 등록)----- <u>사무국장</u>

에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공고) 공인은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② -----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날인)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삭 제>

제9조(공고) -----
----- 구보 -----
-----.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서식 : 생략)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서식 : 현행과 같음)

비고 : -----
 -----공인-----

 -.

[참고자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

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

(단위: cm)

구분		길이
청인	국무회의	5.4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직인	대통령	4.5
	국무총리	3.6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	3

비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2.1.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규격·비치 및 그 밖의”를 “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속 행정기관”을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의결·자문·합의제기관”을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비치·사용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가지고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비치·사용”을 각각 “가지고 사용”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를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관리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가”를 “가로”로, “한다”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기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칭으로 새기거나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이미지공인을”을 “전자이미지공인은”으로, “기관은”을 “기관이”로, “주관부서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를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을 “그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각각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의”를 “공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인을”을 “공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을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공인의 공인명”을 “폐기 공인의 이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고기관”을 “공고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를 “용기”로,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를 “봉인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로, 같은 항 단서 중 “날인할”을 “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 날인의”를 “공인의 인영”으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를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로 한다.

제16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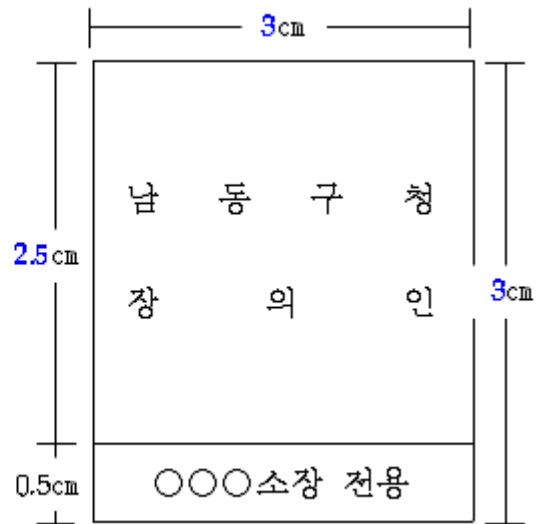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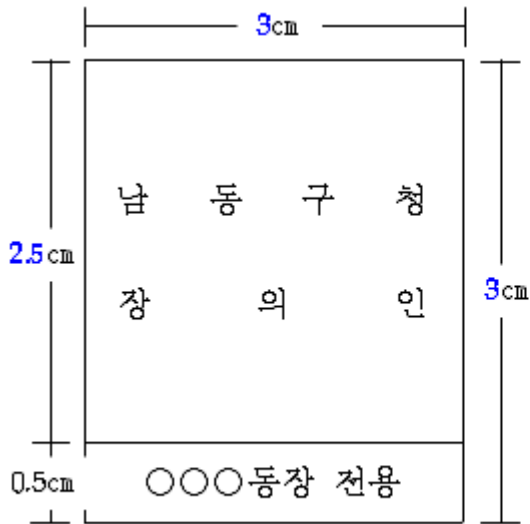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공고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의 각종 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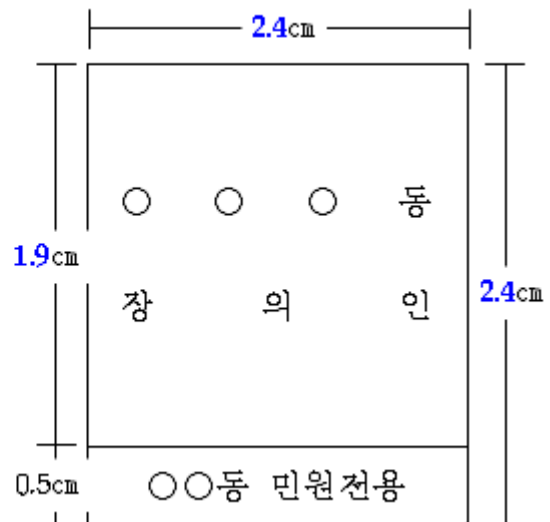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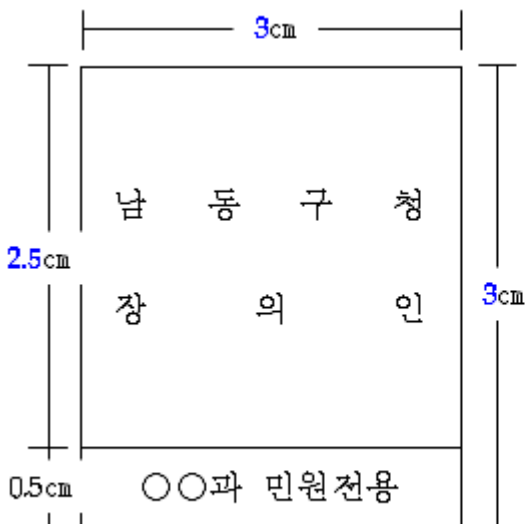
[별표1]

공인의 비치·사용(제2조 관련)

- 제2조제2항



- 제2조제3항



[별표2]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cm)

구 분			한 변의 길이	비고
청 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직 인	기 관 장 인	• 구청장	3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	
		• 6급,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	
	회 계 관 계 직 인	•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기금 운용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의 직인	2.0	
		•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의 직인	1.8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행정기관명 · 공인 규격 · 글씨체 변경에 따른 공인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공인 총계 : 20개
 - 소요예산액 : 671천원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정 재 호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2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19. 2. 26.
3. 처분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4. 공 고 기 간 : 2019. 2. 26. ~ 2019. 3. 12. (15일간)
5. 직권말소 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632	명화	유**	석정로 507 (간석동, 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11-30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732	삼원테크노 밸리(주)	삼원테크노밸 리(주) 오**	남동서로53번길 38 (고잔동, 남 동우리타운광장 C동 20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06-30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744	건강한나라	박**	경인로 742 (간석동, 30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06-30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200018	허브스토리	김**	호구포로888번길 9-3 (간석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11-30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200089	삼진고려홍삼	박**	백범로 232 (만수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07-31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200088	(주)루시퍼	(주)루시퍼 백**	남동대로 909 (간석동, 30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2-22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200138	(주)헬시탑	(주)헬시탑 김**	문화로 101 (구월동, 2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2-22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200150	진홍삼	김**	구월로 192, 120호 (구월동, 힐캐슬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03-09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200260	옛지물	조**	만수로75번길 57 (만수동, 성 신아파트 가동 30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11-01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058	(주)생초록	(주)생초록 윤**	청능대로 596 (논현동, 대우푸 르지오시티 102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12-31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199126	(주)피터킹	(주)주피터킹 강**	남동대로897번길 5 (간석동, 3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03-31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199175	월드신용유통	이**	용천로153번길 27 (간석동, 401호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06-30	2019-02-26
건강기능식품	2010	허브다이어트	황**	백범로169번길 17	사업자등록	2012-05-26	2019-02-26

일반판매업	-0199223			(만수동, 1층일부)	폐업(말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199379	자연과사람	이**	인주대로522번길 52 (구월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09-27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199497	허벌라인	김**	문화서로23번길 36 (구월동, 2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06-29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199674	허브에스라인	우**	남촌동로 23-1, 117호 (남촌동, 남촌동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2-04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199687	이든네이처	최**	장승남로 40 (만수동, 한별프라자 2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10-24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199824	마임간석남부	김**	호구포로899번길 11 (간석동, 2층전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12-31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199876	미금건강샵	김**	호구포로 818 (구월동, 퍼스트 하임프라자 31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03-22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200232	라벤더뷰티	김**	논고개로 120 (논현동, 논현프라자 60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1-31	2019-02-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 -0200047	도매플러스	윤**	서판로 73-4 (만수동, 예촌빌 라 가동 B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09-22	2019-02-26

6. 본 직권말소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 (032)453-2625

2019. 2.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3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174번길 36외8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174번길 36외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항동	560-11, 12,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174번길	25	2009. 11. 16	옛날에 장군이 숨어있었다는 산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 02. 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아산로174번길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0-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8	2009. 11. 16	구월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 는 도로	2019. 02. 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85번길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18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7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북로	42	2009. 11. 16	장자로 북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 02. 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북로4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2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70	2009. 11. 16	종국으로 가는 사선이 가족과 의논하여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 용하여 제명	2019. 02. 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37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0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9-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31	2009. 11. 16	종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능허대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 07. 0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능허대로63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31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41, 6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116	2009. 11. 16	장승이 있었다는 옛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 02. 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승로11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6를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419번길	45	2009. 11. 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 02. 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419번길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5를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8-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9번길	67	2009. 11. 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 02. 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49번길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7를 건물번호로 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5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마달로	64	2009. 07. 10	성마달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9. 02. 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성마달로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4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60-11, 12,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74번길	36	2019.0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0-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6	2019.0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70	2019.0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7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북로	42	2019.0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